

시즌2
제2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 ▲ 이감

[2021학년도 시즈2 제2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19] 예술 : 다큐멘터리 사진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사진 - 다큐멘터리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뉴 다큐멘터리 사진, 내러티브, 원근법적 공간, FSA (농업안정국) 사진 운동

* 지문 분석

문단1 :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1) 사람들은 흔히 사진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찍어 내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생각한다.

[맥락 짚기] ‘사람들이’ ‘흔히’ 갖는 사진에 대한 통념을 소개하며 지문이 시작되고 있다.

2) 특히 현실에 대한 기록을 목표로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서는 이러한 믿음[→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통념]이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 사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믿음이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서 강화된다는 게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현실 기록이 목적이니 그럴 수 있겠다.

3)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은 내러티브와 원근법적 공간을 무기로 이러한 믿음을 공고히 하였다.

⇒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은 ‘내러티브’와 ‘원근법적 공간’을 이용하여 사진이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통념을 강화했다고 한다.

문단2 : 내러티브

1) **내러티브**란 화면 내에 배치된 각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 서사적(敘事的)인 의미 작용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 사진은 한 컷으로 이루어진 정적인 이미지이지만, 화면 내의 요소를 적절히 이용하면 서사적(敘事的)인 의미 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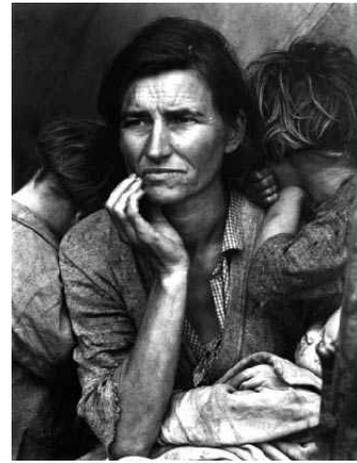
2) 사진이 내러티브적인 특성과 결합한 전형적인 형태는 1930년대 미국에서 전개된 **FSA(농업안정국) 사진 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의 사진에서 찾을 수 있다.

⇒ 내러티브를 이용해 사진이 현실의 재현이라는 믿음을 강화한 사례를 1930년대 미국의 FSA 사진 운동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건데.....

[참고] 농업안정국(Farm Security Administration)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뉴딜 정책에 의해, 농민의 구제와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부서이다. FSA는 사진을 통해 당시 농민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려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홍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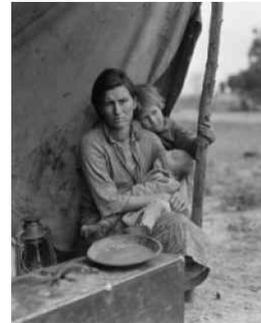
3) 예컨대 도러시아 랭의 「이주민 어머니」(1936)를 보면, 한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관객이 시선을 고정시킬 한 지점**을 제공한다.

⇒ 특정 대상을 화면의 중앙에 위치시킴으로써 관객의 시선이 그 대상에 고정된다고 한다. 그럼 관객의 시선은 여인[→ 어머니]에게 고정될 텐데..... 이것이 내러티브, 즉 서사적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Dorothea Lange, Migrant Mother(1936)>

[참고] 아이들이 뒤돌아 있는 것, 어머니가 한 손을 얼굴에 대고 있는 것은 작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다음 두 사진은 작가가 당시에 찍었지만 전시하지 않은 사진들 중의 일부이다. 작가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화면의 각 요소들을 배치하였고, FSA는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른 것이다.



4) 화면의 [중앙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그녀의 품에 안긴 채 지쳐 잠들어 있는 **갓난아이**와 **허름한 차림의 아이들**로 채워져 있다.

⇒ 관객의 시선은 중앙의 어머니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차차 가장자리에 ‘배치된’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면서 관객은 이 여인이 가난하며 여러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것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게다.

5) 화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고뇌에 잠긴 어머니의 시선을 중심으로 응집하도록 구성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주민 가족**이라는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Rew] ‘한 여인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이 여인은 아이들의 어머니인가 보다. 차림을 보니 형편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아마도 아이들의 아버지는 지금은 함께 있지 못하나 보다. 여인의 눈빛에서 고뇌가 느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화면의 요소들에 의해 관객들이 떠올리는 일련의 것들이, 1)에서 말한 내러티브, 즉 서사적 의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참조] 이러한 내러티브는 대공황과 뉴딜 정책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보다 풍부해졌을 것이다. ‘이 아이와 어머니를 나라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 재정은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등으로 말이다.

문단3 : 원근법적 공간

1) 내러티브는 사진 속의 **원근법적 공간**에 의해 강화된다.

[Rew] 문단1-3)에서 ‘사진이 현실의 충실한 재현’이라는 통념을 강화하는 내러티브는 원근법적인 공간에 의해 강화된다고 한다.

2) 원근법은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멀고 가까운 거리감을 표현함으로써 2차원의 평면 위에 3차원의 공간을 구성해 준다.

⇒ 원근법은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입체적인 공간감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사람은 사진의 내러티브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참조] ‘원근법’은 **현실의 사실적인 재현**을 추구하는 예술 사조에서 즐겨 사용된 표현 기법이다.

3) 이[→ 원근법]를 통해 관객은 자연스럽게 카메라의 시각을 자신의 시각으로 받아들일게 된다.

⇒ 원근감으로 인해 관객은 카메라에 찍힌 대상을 자신이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다. 문단2-3)의 「이주민 어머니」를 보는 관객은 곤경에 처한 가족을 직접 마주한 느낌을 받게 되겠다.

4) 이렇게 원근법적 공간으로 강화된 내러티브를 수용한 관객은 작가의 의도나 카메라의 개입을 느끼지 못하고 사진이 보여 주는 현실이 실제의 현실이라고 믿고 이들[→ 사진 속 인물]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 원근법과 내러티브를 통해 사진이 실제 현실의 반영이라는 통념을 강화하려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겠다. FSA 사진 운동은 '작가의 의도'와 '카메라의 개입'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사진이 보여 주는 것이 실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믿게 하려고 했다. 그 결과 관객은 사진 속의 인물들에게 더욱 공감하게 되었다.

[참고] FSA는 사진 속에 인물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진, 작가의 그림자가 비친 사진 등은 엄격히 배제하였다고 한다. 관객들이 자신들이 보는 사진이 누군가의 의도와 개입의 결과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5) 이는 FSA 사진가들이 의도한 바이지만 이 사진들은 정부의 기획과 사진가들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편집된 것이라는 점에서 허구적인 이미지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 현실에 있는 실제 인물을 찍은 사진이라도 누군가의 기획과 의도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결정된 것이라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고] 사진에 재현된 화면을 있는 그대로의 실제 현실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이유가 어려운 처지의 이들에 대한 깊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이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겠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과 의도가 무엇이든 사진을 찍고 고른 사람들이 자신이 보여 주는 바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

문단4 : 내러티브와 원근법에 반기를 든 뉴 다큐멘터리 사진

1) 기존의 사회 질서가 흔들리던 1960년대에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한 일군의 사진가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전통적 다큐멘터리 사진과 구별되는 뉴 다큐멘터리 사진이라 천명(= 진리나 사실, 입장 따위를 드러내어 밝힘)하였는데, ……

[맥락 짚기] 뉴 다큐멘터리 사진과 전통적 다큐멘터리 사진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참고] 미국의 1960년대는 흑인 민권 운동과 여성 운동, 베트남전의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 등 기존의 권위에 반발하는 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난 시기였다는 것은 알아 두도록 하자.

2) ……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내러티브와 원근법적 공간 구성에 반기를 든 일이다.

⇒ 전통적 다큐멘터리 사진의 핵심적 요소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사진이 현실 그대로의 재현이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이겠다.

3) 리 프리들랜더의 「뉴욕 시티」(1965)는 실수로 거리의 한 모퉁이를 찍은 것처럼 구도도 엉성하고 중심이 될 만한 대상도 없다.

[Rew] 문단2-3)에서 대상을 화면 중앙에 자리 잡게 한 것과 대조된다. 화면의 여러 요소들이 응집될 중심이 따로 없으니 '내러티브'를 기대하기가 어렵겠다.

4) 화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뒤편에 보이는 여인은 다리만 보일 뿐이어서 사진의 메시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 중심이 될 만한 대상도 없고 주변에 있는 대상도 부분만 놓이니, 관객들은 이 사진을 통해 작가가 무엇을 보여 주려고 하는가를 파악하기 힘들겠다.

5) 전반적으로 파편적인 이미지들만 보일 뿐이어서 전체적인 의미는 더욱 모호해지는데 이는 프리들랜더의 눈에 비친 당시의 혼란스러운 현실과 맞닿아 있다.

⇒ 작가는 '화면 중앙에 위치한 대상에 여러 요소들을 응집'시키지 않았고 따라서 관객들은 그의 사진을 보고 '내러티브'를 찾을 수 없었다. 관객들은 사진을 보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프리들랜더가 보기에는 당시 현실이 그랬다는 거겠다.

6) 사진은 특정한 의미[→ 내러티브]를 전달하지 않아서 오히려 관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미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의미를 찾아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 작가가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니 관객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다.

문단5 : 뉴 다큐멘터리 사진의 원근법적 공간 붕괴

1) 또한 이들의 사진에서는 원근법적 공간도 붕괴되었다.

[Rew] 문단3-3)에서 말한, 관객이 '카메라의 시각을 자신의 시각으로 받아들일게' 하는 원근법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다.

2) 프리들랜더의 「앨버커키」(1972)는 앨버커키의 한 평범한 거리를 찍은 사진처럼 보인다.

⇒ 이 사진이 원근법적 공간이 붕괴되었다면 관객은 사진에서 3차원의 공간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진에서는 원근법적 공간에 나타나는 어떠한 중심점도 찾아볼 수 없어서, 우리의 눈은 한 곳에 결박되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게 된다.

⇒ 원근법적 공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중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진에는 중심점이 없어 관객은 시선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하고 이리저리 둘러보게 된다는 거다.

4) 이[→ 원근감을 느낄 수 없는 것]로 인해 일상적인 이미지는 낯설게 보이고 깊이감도 느껴지지 않으며 사진은 2차원의 평면으로 보이게 된다.

⇒ 관객은 원근감을 느낄 수 없어 일상적인 이미지를 더 이상 일상적으로 느낄 수 없었을 거다. 이것이 원근법적 공간의 붕괴이다.

5) 프리들랜더는 우리에게 앨버커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매체 그 자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 전통적 다큐멘터리 사진과 달리 프리들랜더의 사진은 관객이 보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를 찍은 매체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준다는 거다.

문단6 : 뉴 다큐멘터리 사진의 의의

뉴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진적 재현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 사진에 대한 통념]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작가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장면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해 주었다.

⇒ 뉴 다큐멘터리 사진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사진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포착해서 보여 주는 장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농협 돈을 빌린 사람 본인도 문제지만, 그 대출에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몇 사람이 파산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줄줄이 빚쟁이가 되어 파산하곤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민서 안 망하고 백 년을 살 끼라.”

⇒ 황만근은 **바보**이지만 1990년대 농촌의 현실 속에서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본질의 역전**이라는 이야기 요소 속에 **당대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이 담겨 있다. 크나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옛말을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 방식이다.

* 참고 자료

작품 전체 줄거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농민 시위의 효과를 위해] 모두 경운기를 몰고 참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나 마을에서 실제로 참가할 사람이 별로 없자 이장은 황만근에게 시위 현장에 경운기를 몰고 참석하라고 강권한다. 황만근은 차들이 썩썩 달리는 국도에 경운기를 몰고서 백 리 길을 훑고 위험하게 달려 시위 현장에 갔으나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황만근은 어머니가 먹고 싶다고 떼를 쓴 고등어를 사 들고 귀갓길에 나서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차들과 부딪힐 뻔한 위기가 자꾸 이어지다 끝내 길가의 논으로 추락하여 경운기가 부서진다. 황만근은 경운기 옆에서 얼어 죽어 일주일 뒤에나 유골로 마을에 돌아온다.

⇒ 이 소설은 옛날의 전기 양식[→ 일화를 통해 죽은 사람의 인물됨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글쓴이의 예찬이나 평가의 말을 덧붙이는 글쓰기 양식]을 본뜨고 있다. 일화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 씨’라는 관찰자의 눈에 포착되는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이나 태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6~31] 인문-과학 : 광전 효과와 과학적 실재론, 과학적 반실재론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물리학 - 광전 효과
 과학 이론, 빛, 전자, 광전 효과, 광자, 아인슈타인, 광양자 이론, 에너지, 일함수, 파동설, 파장, 진동수, 빛의 세기, 특정 진동수
 철학 - 과학 철학 - 과학적 실재론, 과학적 반실재론
 이론적 존재자, 과학적 실재론,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가설, 퍼트넘, 기적 논증, 과학적 반실재론, 경험론, 반 프라센, 구성적 경험론

*** 지문 분석**

문단1 : 이론적 존재자를 가정하는 과학 이론

1) **과학 이론**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육안(=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는 맨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인 이론적 존재자**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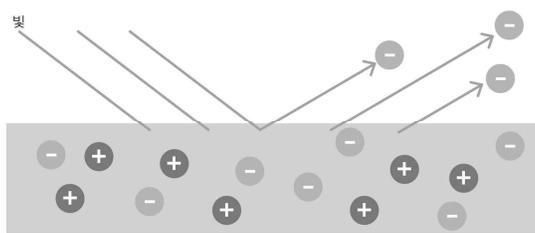
⇒ 그렇겠다. 지나치게 작은 것도 지나치게 큰 것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연구를 할 때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이론적 존재자**를 가정해야 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많았겠다.

[참고] '이론적 존재자'는 지문에 나오는 전자기파, 전자, 원자 등과 같은 소립자의 세계부터 은하, 암흑 물질과 같이 다양하다.

2) 금속 표면에 **빛**을 쬐일 때 **전자**가 금속 내부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인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광자(光子)**라는 이론적 존재자를 가정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光量子) 이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목] 어떤 경우에 이론적 존재자를 가정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금속 표면에 빛을 쬐이면 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관찰됐다. 아니, 빛을 쬐었는데 엉뚱하게 전자가 튀어나오다니! 신기한 발견이었지만 과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거다. 결국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광자'라는 이론적 존재자를 가정했다는 말이다.



[참고] '광자(photon)'는 입자로서의 '빛'을 말하는 것이다. 고대부터 '빛은 모래 같은 알갱이가 아닐까?' 하는 입장이 있어 왔다.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빛 알'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게 '광자'다. 한편 '광양자(light quantum)'는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 개념을 기초로 아인슈타인에 의해 제안되었다. 플랑크는 빛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띄엄띄엄한 값을 가지며, 일정한 정수 배로만 흡수되거나 방출됨을 뜻한다.

문단2 : 파동설에 따른 광전 효과 해석 실패

1)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금속 원자가 **전자를 묶어 두고 있는 힘을 끊어 낼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 금속 원자에 묶여 있는 전자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자 내부에 안정된 상태로 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전자는 안정된 상태에서 벗어나 원자 바깥으로, 즉 금속의 표면에서

튀어나오게 된다. 이처럼 금속에 붙잡혀 있는 전자를 떼어 내기 위해서는 전자의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다.

2) 이를 **일함수**라고 부르며 일함수는 금속의 종류마다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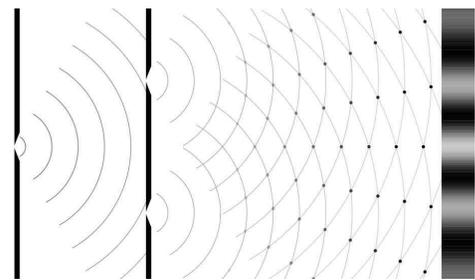
⇒ 금속 내의 전자를 묶어 두는 힘을 끊어 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일함수'라 하나 보다. 따라서 일함수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빛은 전자를 떼어 낼 수 없겠고, 일함수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이어야 전자를 떼어 낼 수 있겠다.

⇒ 금속의 종류에 따라 구성하는 원자의 구조도 달라지니까 전자의 결합 에너지도 다르고, 일함수도 이에 따라 달라지겠다.

3) 광양자 이론이 제기되기 이전에는 빛을 연속적인 파동의 흐름으로 보는 **파동설**이 정설로 인정받고 있었고, 이를 통해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있었다.

⇒ 빛이 파동이라는 이론의 핵심은 '연속성'에 있다. 광전 효과가 처음 발견될 당시에는 빛을 파동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당연히 광전 효과도 파동설에 근거해서 설명했겠다.

[참고] '빛의 실체가 파동이나, 입자냐'에 대한 견해는 과학자들마다 달랐지만 '이중 슬릿 실험'은 빛이 파동임을 보여 준 대표적인 실험이다. 아주 작은 틈을 뜻하는 슬릿을 설치한 후 빛을 슬릿을 향해 쬐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벽에는 흰 선과 검은 선이 규칙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개 이상의 파동이 강하게 합쳐지거나 약하게 합쳐지는 간섭 현상 때문이다. 빛이 입자라면 불가능한 현상이었으므로 이 실험의 결과에 따라 빛은 파동이라는 파동설이 정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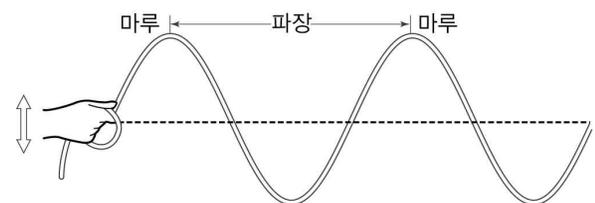


4) 빛이 파동인 만큼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가 작은, 즉 **파장이 길어서 진동수가 작은 빛**이라도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거나

⇒ 그렇다. 빛이 파동이면 에너지는 연속적이므로 에너지가 작은 빛이라도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면, 즉 밝은 빛을 금속판에 쬐이면 전자는 빛의 에너지를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 이후 금속판에 쬐인 빛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커지면 전자는 튀어나올 것이다.

빛의 파장 ↑ ⇨ 진동수 ↓ ⇨ 빛의 에너지 ↓

[참고]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지고 에너지도 작아진다. 반대로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커지고 에너지도 커진다. 왜 그런가? 긴 줄을 흔들어 보자. 긴 줄을 손에 잡고 천천히 아래위로 흔들면, 물결무늬의 파동이 생긴다. 다음 그림을 보면, 파동이 위로 솟은 부분이 '마루'인데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가 '파장'이 된다. 줄을 천천히 잡고 흔들면 줄은 천천히 출렁거리고 파장은 길어진다.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 역시 작아지겠다. 이때 줄을 흔드는 힘이 적게 드는 것과 빛의 에너지가 작다는 것이 유사하다.



5) [에너지가 작은 빛일지라도] 오래 쬐이기만 하면 전자는 파장이 전하는 진동 에너지를 모았다가 **어느 순간** → 전자의 일함수보다 크면 튀어나온다는 설명이다.

⇒ 반면, 파동설에 따르면 에너지가 작은 빛이라도 주구장창 계속 금속에 쬐이면 빛의 진동 에너지는 연속적이므로 전자는 이걸 잘 모았다가 전자의 일함수보다 커지면 금속 표면에서 튀어 나와야 한다. 가령, 수도꼭지에서 강한 물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약한 물줄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약한 물줄기라도 계속 틀어 놓으면 물의 양이 많아지듯이 에너지도 더 커지는 것이다. 파동설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다.

6) 그런데 실제의 실험 결과 [빛의]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아무리 강하게 쬐어도 전자는 방출되지 않았다.

⇒ 이론과 실제 실험의 결과가 달랐다. 빛이 파동이라면 4)에서 설명했듯이, 진동수가 작은 빛이라도 빛을 강하게 쬐이면 전자가 튀어 나와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빛을 강하게 쬐어도, 즉 같은 파장의 빛을 밝게 비춰도 전자는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럴까?

7) 반면 진동수가 큰 빛[→ 에너지가 큰 빛]을 쬐이면 아무리 빛을 약하게 쬐어도 전자는 빛을 쬐이자마자 튀어 나왔다.

⇒ 반대로 진동수가 큰 빛을 금속에 쬐었다. 물론 진동수가 큰 빛은 에너지도 크므로 전자는 튀어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에너지가 큰 빛을 아무리 아무리 약하게 쬐어도, 이를테면 아주 약하게 쬐어도 전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튀어 나왔다는 거다. 왜 그럴까? 이걸 빛이 파동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설명할 수 없는 실험 결과다.

빛의 파동설	실제 실험 결과
에너지가 작은 빛이라도 빛을 강하게 금속에 쬐이면 전자가 방출될 것이다.	⇒ 전자가 방출되지 않음
에너지가 작은 빛이라도 빛을 오래 금속에 쬐이면 전자가 방출될 것이다.	⇒ 전자가 방출되지 않음
에너지가 큰 빛이라도 아주 약하게 쬐으면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 빛을 쬐이자마자 전자가 방출됨

<빛의 파동설과 실험 결과의 불일치>

문단3 : 광양자 이론에 따른 광전 효과 해석 성공

1) 파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실험 결과는 광양자 이론에 의해 성공적으로 설명되었다.

⇒ 그렇다면 ‘광전 효과’에 대해 파동설이 틀렸다는 건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2) 광양자 이론에 의하면 빛은 광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광자는 단위 시간당 입자가 진동하는 횟수인 진동수에 비례하는 만큼 에너지를 가진다.

[Rew] 문단1에서 설명한 이론적 존재자가 ‘광자’다. 아인슈타인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빛은 입자가 아닐까?’ 하고 가정해 본 거다.

⇒ 문단2에서 빛을 파동으로 볼 때는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반대로 빛을 ‘입자’로 볼 때는 실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설명되었다. 빛이 파동일 때와 달리 광양자 이론에 의하면 빛은 광자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가진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므로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도 커지겠다.

$$\therefore \text{광자 } E \propto \text{광자의 진동수}$$

[참고] 광자의 에너지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과학에서 얼마아마한 사건이었다. 양자 역학이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광자 1개의 에너지 E는 hf의 값을 가진다. h는 플랑크 상수로, 물리에서 대표적인 물리량을 나타내는 상수이며 f는 광자의 진동수이다. 이에 따라 빛의 에너지는 hf의 정수 배로만 흡수되거나 방출될 수 있다. 즉 에너지는 띄엄띄엄한 값, 불연속적이라는 말이다. 빛의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3) 금속 표면에 빛을 쬐이면 광자는 각각 전자 하나씩과 충돌하여 자신이 [→ 광자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전자에] 전달한 뒤 [광자는] 소멸된다.

⇒ 광양자 이론에 따르면 각각의 광자가 에너지를 가지는 만큼, 광전 효과도 ‘광자 하나’와 ‘전자 하나’의 충돌로 설명한다. 충돌된 후에 광자 하나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전자에 전달한 뒤 소멸한다. 흡사 구슬치기와 유사하다. 청색광일 때는 청색 광자 구슬 하나가 전자 구슬 하나와 충돌한다. 청색 광자 구슬의 모든 에너지를 전달받은 전자 구슬은 다른 방향으로 튕겨서 움직이겠다. 구슬치기와 좀 다른 점은 구슬 하나가 사라진다는 점이겠다.

4) 그래서[→ 광자 1개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전자 1개에 전달해서] 광자가 지니고 있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큰 경우에만 전자가 튀어 나온다.

[주목] 전자는 자신의 일함수보다 큰 빛 에너지를 받아야 튀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광자 1개의 에너지 > 일함수’인 경우에만 전자가 튀어 나오겠다. 반면 ‘광자 1개의 에너지 < 일함수’인 경우에는 전자가 나오지 않는단다. 그렇다면 ‘광자 1개의 에너지 = 일함수’일 때는? 맞다. 전자는 나오지 않는다. 이때 광자 1개의 에너지가 바로 문단2-6)에서 설명한 ‘특정 진동수’다. 과학에서 ‘특정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혹은 ‘문턱 진동수’라 한다.

광자 1개의 에너지 > 일함수	⇒	전자가 방출됨
광자 1개의 에너지 ≤ 일함수	⇒	전자가 방출되지 않음

5) 아무리 센 빛을 금속에 쬐어도 전자가 튀어 나오지 않았던 상황 [→ 에너지가 작지만 빛을 강하게 금속에 쬐이는 경우]은, 빛의 세기가 강해서[→ 같은 파장의 빛을 밝게 해도] 금속 표면에 도달하는 광자의 개수가 많더라도 광자 하나가 지닌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작아서 전자가 튀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맥락 짚기] 빛을 파동으로 볼 때, 문단2-4)~6)에 나타난 문제점을 광양자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 맞다. 빛의 세기가 강하다는 것은 광자의 개수가 많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광자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광자 1개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커야 한다. 광전 효과는 광자 1개와 전자 1개의 충돌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에너지가 작은 적색광을 더 강하게 비춰도 적색광 광자 1개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작으면 전자가 튀어 나오지 못한다. 반면 에너지가 큰 청색광은 빛을 약하게 금속에 쬐어도 광자 1개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빛을 쬐이자마자 전자가 바로 튀어 나오겠다.

[참고]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 한다. 입자로서의 빛의 성질을 말할 때는 ‘광양자’라 하고, 파동으로서의 빛의 성질을 말할 때는 ‘전자기파’라 한다.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나타내진 않는다. 어떤 때는 입자로서, 어떤 때는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드러낸다. 이런 빛의 속성 때문에 과학자들의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다.

문단4 : 과학적 실재론

1) 이처럼 [빛을 입자의 흐름으로 보는] 광양자 이론이 광전 효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해 내었지만 이론적 존재자인 광자는 관찰이 불가능하기에 그것[→ 광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 왔다.

[맥락 짚기] 논점이 ‘광전 효과’에서 문단1에서 언급한 ‘이론적 존재자’로 옮겨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론적 존재자’가 실재하는지에 대한 관점들이 나오겠다.

2) 성공적인 과학 이론이 가정하는 이론적 존재자가 실재한다는 철학적 입장을 과학적 실재론이라고 한다.

⇒ 그렇다. 과학적 실재론은 과학 이론이 가정하는 이론적 존재자가 실재한다는 입장인데, 무척 상식적으로 여겨진다.

3) 과학적 실재론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추론 방법에 의해 정당화되는데, 이[→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는 하나의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가설**들이 존재할 때, ……

⇒ 과학적 실재론이 정당화되는 추론 방법으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 소개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가설이 존재할 때 추론하는 방법인가 보다.

4) …… 그 가설들 중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선의 가설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추론 방법이다.

⇒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에 a, b, c……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중에서 a도 설명에 문제가 있고, b도 설명에 문제가 있는데 c가 경험적 현상을 가장 잘 설명했다면, ‘그때, c가 최선으로 설명하는 가설이군.’ 하고 c의 가설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문단3의 광양자 이론의 성공이 여기에 해당된다.

5) 이 방법[→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방법]에 따르면 광양자 이론의 성공[→ 설명되는 현상]은 광자라는 이론적 존재자가 실재한다는 가설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 그렇겠다. 광양자 이론이 성공한 것은 광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설을 통해서 잘 설명된다. 이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에서 설명되는 대상은 ‘광양자 이론의 성공’이며, 최선의 설명은 ‘광자가 실재한다는 가설’이다.

6) 이[→ 광자의 실재성을 통해 광양자 이론의 성공을 설명하는 방식]를 일반화하면 성공적인 과학 이론이 가정하는 이론적 존재자가 실재한다는 과학적 실재론은 그 과학 이론의 성공이라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되는 현상	최선의 설명
광양자 이론의 성공	광자가 실재한다는 가설

↓ (일반화)

이론적 존재자를 가정한 과학 이론의 성공	이론적 존재자가 실재한다는 가설 [→ 과학적 실재론]
------------------------	-------------------------------

7) **퍼트넘**이 제시한 **기적 논증** 역시 이 추론[→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방법이 적용된 논증이라 볼 수 있다.

⇒ ‘기적 논증’도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방법을 적용한 논증이라는 건데……

8) 그[→ 퍼트넘]에 따르면 과학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이론적 존재자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반실재론**은 ‘과학의 성공은 기적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는 나쁜 설명을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과학 이론의 성공을 과학적 실재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면, 과학 이론의 성공을 과학적 반실재론으로 설명하면 과학의 성공은 기적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므로 과학적 반실재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적 논증이다.

문단5 : 반 프라센

1)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반론은 대개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라는 **경험론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반대 입장이 소개되고 있다. 입장이 아주 심플하다. 지식의 원천이 ‘경험’ 딱 하나밖에 없다.

2) **반 프라센**은 과학적 실재론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반 프라센이 과학적 실재론을 반대하는 학자인가 보다. 반박 근거 역시 심플하다.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과학적 실재론자들은 과학의 목적을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참인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 과학적 실재론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선의 가설을 참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과학의 목적 역시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참인 이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반 프라센이 보기에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은 경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세계’는 경험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므로 과학적 실재론자들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4) 반 프라센에게 과학의 목적은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적합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과학 이론이 **경험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은 그 이론이 **관찰 가능한 영역에 대해 말하는 바가 참**이라는 의미이다.

⇒ 그럼 반 프라센이 생각하는 과학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 반 프라센은 똑같은 논리로 대답한다. 과학의 목적은 이 ‘세계’ 전체가 아니라 ‘관찰 가능한 영역’에 대해 경험적으로 적합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 또 물어보자. 경험적으로 적합하다는 게 무슨 뜻인데? 반 프라센은 ‘관찰 가능한 영역에 대해 말하는 바가 참이다’라고 정의한다. 뭐, 같은 말이다.

5) 이렇게 볼 때[→ 반 프라센의 입장에 따르면] 과학 이론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이론이 경험적으로 적합하다는 믿음만을 수용하는 것**이다.

⇒ 반 프라센에게 과학 이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적합’하며, 이에 대한 ‘믿음’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 프라센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뭘까?

6) 그 이론이 가정하는 관찰 불가능한 이론적 존재자의 실재에 대한 믿음은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에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과학적 실재론의 핵심은 ‘가설을 참으로 수용한다는 것’에 있다. 최선의 설명인 가설을 참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가설에 포함된 ‘이론적 존재자’까지 과학적 실재론은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 프라센이 보기에 ‘이론적 존재자에 대한 믿음’은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인슈타인이 가정한 ‘광자’ 역시 가정에 불과할 뿐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자가 실재한다는 믿음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문단6 : 반 프라센의 구성적 경험론

1) 더 나아가 반 프라센은 과학이 성공적인 이유 역시 이론적 존재자들이 실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찰 자료들과 잘 부합하는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 성공적인 과학 이론에 대한 반 프라센의 관점이다. 그 과학 이론이 성공한 것은 이론의 과정에서 가정한 이론적 존재자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관찰 자료들에 맞게 이론을 잘 구성했기 때문 이란다. 물론 그 이론들조차 ‘이론적 모델’에 불과하다고 본다.

2) 이[→ 반 프라센의] 관점에 따르면 광양자 이론이 광전 효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자가 실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론이 광전 효과와 관련된 관찰 자료들에 잘 부합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 1)에 대한 상술이다. 광전 효과를 설명한 광양자 이론이 성공적 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우리는 광자나 전자 역시도 실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 프라센에 의하면 과학적 실재론의 가설에 포함된 ‘광자의 실재’는 경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반 프라센은 광양자 이론이 성공한 이유는 단지, 광전 효과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잘 ‘구성’했을 뿐이라고 본다.

3) 만약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과학 이론이 경험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이론은 경험적으로 더 적합하게 구성된 다른 과학 이론으로 대체될 것이다.

⇒ 반 프라센 관점의 핵심은 ‘이론의 구성’에 있다. 성공적인 과학 이론이 잘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론적 존재자에 대한 믿음을 수용하지 않으므로 폐기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험적으로 더 적합하게 ‘구성’된 이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4) 이렇게 경험론적 입장에 서서 과학 이론을 하나의 구성된 모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반 프라센의 입장을 **구성적 경험론**이라고 한다.

⇒ ‘과학 이론’을 ‘구성된 모델’이라 표현하고 있다. 반 프라센은 이론을 이론이라 하지 않고 왜 모델이라고 할까? 3)에서 주장한 맥락 때문이다. 반 프라센에게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그저 경험적으로 적합하게 잘 구성된 것에 불과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언제든 폐기되고 대체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성공적인 과학 이론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모델’일 뿐임에 주목하여 반 프라센의 입장을 ‘구성적 경험론’이라 한다.

문단7 : 과학적 실재론, 과학적 반실재론의 의의

1) 과학적 실재론은 일반인의 상식에 잘 부합하면서 실제 과학자들이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의의[→ 중요성과 가치]가 있다.

⇒ 상식적으로 그렇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전자’나 ‘원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가. 과학자들 또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론적 존재자를 가정해서 연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 실재론은 의의가 있다는 말이다.

2) 반면에 반 프라센의 구성적 경험론은 반실재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과학의 성공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 문단6에서 구구절절 설명했던 바다. 구성적 경험론에 따르면, 과학 이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론적 존재자가 실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찰 자료들에 맞게 이론을 잘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찰 자료에 맞게 이론적 모델을 구성한다는 설명만으로도 과학 이론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거다.



[32~36] 현대시 : (가) 신석정, 「대바람 소리」

* 작품 평가

잔잔하게 흐르는 작품이다. 사실 잔잔한 흐름은 감상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다이내믹한 게 건더기가 많으니까.

* 작품 분석

1연 : 창을 흔드는 대바람 소리

대바람[→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 청각적 심상]
들리더니
소소(蕭蕭)한 대바람 소리
창을 흔들더니

- 1)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이 창을 흔들고 있는 거다.
- 2) '들리더니', '흔들더니'로 각운(脚韻)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반복하면서 변형하는 반복과 변형 기법도 나타나 있다.
- 3)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는 거다. 바람 부는 날이라는 거다. 화자가 방에서, 창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듣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2연 : 눈이 올 듯한 겨울 풍경

소설(小雪) 지낸 하늘을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닫이에 가끔
그늘이 진다[→ 시각적 심상].

- 1) 겨울 풍경이다. 소설(小雪)이 지났더니까 음력으로 11월 22일 이후의 어느 날이다.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2) 날은 흐리다. 구름이 끼어서 '미닫이'에 '그늘이 진다'고 했다. 바람과 어우러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화자는 지금 방 안에서 방 밖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거다.

3연 : 무료한 일상

국화 향기 흔들리는[→ 방에 국화가 놓여 있는 거다. 후각적 심상]
좁은 서실(書室)을
무료히 거닐다[→ 뭔가 한가로운, 지루한 상황이다.]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 보면
그저 그런 날을

- 1) 본격적으로 방 안의 분위기가 그려진다. 그런데 지루하고 심심한 일상의 모습이다. 잠이 오면 자고, 깨면 앉아서 글이나 좀 보고 하는 날 들인 거다.
- 2) '그저 그런 날'은 '무료히'와 연결되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알려 준다. 아마도 방 안에만 있으니 그럴 법도 할 것이다.
- 3) 중요한 것은 2연까지의 바깥 분위기와 사뭇 대조된다는 점이다. 바깥은 바람과 구름이 휩쓸고 지나가지만 방 안에는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다. 그런데 왜 하필 방 안에 국화를 키우고 있는가? 국화는 조선의 문인화에 자주 등장하는 사군자 중의 하나이다. 특히, 국화는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고 하여, 서리 내리는 계절에 피어난다는 점에서 시련에 굴하지 않는 선비의 고고한 절개를 표상한다.
- 4) 자, 이제 무언가 조금 선명해진다. 화자는 지금 어둡고 혼란스러운 바깥세상에서 벗어나 방 안에서 고고한 정신을 표상하는 국화를 키우며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좀 무료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4연 : 문득 읽은 '낙지론'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낙지론(樂志論)」을
읽어도 보고……

- 1) 답답함과 무료함 속에서 방을 거닐던 순간에 문득 병풍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 2) 그것은 「낙지론」이다. '낙지론'은 중국 후한 때의 중장통이 지은 글이다. 내용은 대충 이렇다. 벼슬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과 시를 향유하며 자연과 우주를 사색하며 사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거다. 뭐, 배부른 소리라면 배부른 소리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입신양명(立身揚名), 즉 출세해서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을 최고로 여기던 시대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자신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한 글의 내용은, 방 안에서 국화만 가꾸면서 무료하게 지내던 화자의 시선을 붙잡을 만했겠다.

5연 : 자족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

그렇다!
이무리 쪼들리고
웅숭그릴지언정
—「어찌 제왕(帝王)의 문(門)에 들을 부러워하라」

- 1) '그렇다'라는 시구에서는, 화자가 병풍의 글을 읽고 무언가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쪼들리고 / 웅숭그릴지언정'은 빈한한 삶을 뜻하는 거다. 우리는 3연에서 화자가 바깥세상에 나아가지 않은 채 방에서 국화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삶이 부나 명예를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다.
- 3) '제왕의 문에 들'은 벼슬길에 나아간다는 뜻이다. 「낙지론(樂志論)」을 쓴 중장통이란 사람은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평생 향촌에 묻혀 살았다. 화자는 중장통의 말에 기대어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로서의 긍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 4) 이제 분명해졌다. 2연에서 무료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낙지론'을 읽으면서 해소된 것이다. '그래, 좀 무료하고 답답하고 쪼들리고는 있지만, 중장통이 말한 것처럼 정신세계를 지켜 가는 삶이 옳은 거였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6연 : 대바람 소리에 실려 오는 거문고 소리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머언 거문고 소리……

- 1) 대나무 숲의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왜 갑자기 거문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일까? 1연에서 화자는 대바람 소리에서 쓸쓸하다는 느낌만 받았다. 그런데 6연에서는 대바람 소리에서 '거문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왜일까? 중장통의 '낙지론'을 읽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대바람 소리로 인해 어지러웠던 마음이 중장통의 글을 읽으며 평온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 2) 그러므로 거문고 소리는 대바람과 서로 호응하는 이미지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아취(雅趣)가 있고 선비적인 자세, 태도 등을 공유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4, 5연의 '낙지론'과 '낙지론'에 대한 공감에서 쪽이 어지는 흐름을 형성한다. 한가로움과 무료하지만, 맑고 고상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세속을 떠나 살아가는 선비의 삶인 거다.

주제 : 은둔과 달관의 삶에 대한 다짐 혹은 자기 성찰

[32~36] 현대시 : (나) 김선우, 「깨끗한 식사」

* 작품 평가

비유적 표현 몇 군데를 맥락에 맞게 해석하는 것에 주의하면 되겠다. 차분히 해설을 따라 읽자.

* 작품 분석

1연 :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할 생명의 의지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동물]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말간 천 개의 눈망울로 뻗히 나를 쳐다보기 일쑤[→ 식물에게서도 느껴지는 생명의 소중함 / 생명의 의지], 이 고요한 사냥감들[→ ‘풀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 생명에의 의지] 있으니 내 앓은 접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희생되기도 하는 인간의 삶을 ‘접시’로 비유]나 그들 앓은 접시[→ 나의 음식이 되어 올라온 생명들이 놓인 접시]나 매일반[→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면에서는 다를 바 없음.].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반[→ 과거와 현재, 생식과 육식을 가릴 것 없이 결국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게 소중하며, 모든 생명체의 생명 의지는 존엄하다는 인식]

⇒ 채식주의자에 관한 이야기로 서두를 떴었으나, 생명의 소중함은 인간, 동물, 식물 모두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2연 : 생명 앞에서 떨림을 상실한 ‘나’

문제는 내가 c.떨림을 잃어 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a.만년 전의 내 할아버지가 b.알락꼬리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c.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a.내 할머니들이 b.돌칼로 어린 죽순 밑동을 끊어 내던 순간, c.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d.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 ⇒ a는 인류의 조상이겠다.
- ⇒ b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떤 대상을 희생시키는 순간이겠다.
- ⇒ c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희생 되는 존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외심이겠다.
- ⇒ d는 c를 상실한 채[→ 진정성을 잃은 채] 허울만 남은 의식 혹은 태도겠다.

3연 :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고 이기적 욕망만이 난무하는 현실에 대한 회의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내가 생존하기 위해] 나 아닌 것의 숨을 끊을 때[→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그 희생에 대한 존중, 고마움, 미안함의 감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욕중한 접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생명을 존중하고 경외심을 느끼며 대할 수 있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무거운 몸을 지니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훼손된 삶의 모습을 지니고,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나!]

- ⇒ 1연의 ‘내 앓은 접시’나 3연의 ‘내 올라앉은 욕중한 접시’는 모두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희생을 당한 사람에 대한 비유적 표현 이겠다. ‘나’가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하듯이, ‘나’의 생명 또한 생존 경쟁 속에서 훼손되고 희생당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다.
- ⇒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섭리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지녀야 할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상실한 것이 현대인인요, 현대 사회라는 인식을 보여 준다.

주제 :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 및 현대 사회의 현실에 대한 회의



[37~41] 사회 : 형사 재심 제도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형사소송법

상소, 상급 법원, 확정판결, 확정력, 법적 안정성, 형사소송법, 형사 재심 제도, 재심 청구, 재심 개시 절차, 본안 심판 절차, 재심 사유, 신규성, 명백성, 필요설, 불필요설, 절충설, 엄격설, 자유 심증, 완화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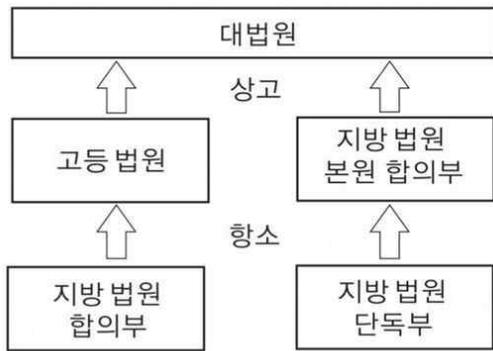
* 지문 분석

문단1 : 상소 제도

1) 법원에서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그에 대한 불복 신청인 **상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한마디로 ‘상소’란, 하급 법원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동일 사안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고한 자를 구제하고 기존 판결의 오판을 시정할 기회 역시 사라질 게다.

[참고] 제1심[→ 지방 법원 단독부·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고등 법원,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이 둘을 합쳐 ‘상소’라 한다. 상고에 의한 최종심은 대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는 이루어질 수 없다.



2) 상소하지 않거나 상급 법원들에서의 재판까지 모두 끝나면 판결이 확정되며, 이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는 [상소와 같은] **보통의 불복 신청**으로는 취소 내지 변경되지 않는 힘인 **확정력**을 지녀서,

⇒ 상소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더 이상 뒤집히지 않는 ‘확정판결’이 된다. 또한 상소하였다더라도 상급 법원들에서의 재판까지 모두 끝나면 마지막 판결이 확정판결이 된다.

[주목] ‘보통의 불복 신청’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는 말은, ‘특별한 불복 신청’으로는 뒤집을 수 있음을 내포할 게다.

* 개념 확장

기판력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확정판결로서 ‘확정력’을 갖는다. 확정력에 의해 확정판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없으며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 한다. 또한 확정판결이 다른 사안[→ 소송물]에 대해서는 또 다시 다룰 수가 없는데 이를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이라 한다.

따라서 패소한 소송의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며 소는 기각된다. 승소한 소송의 당사자 역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며 소는 각하된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공고히 한다.

3)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인 **법적 안정성**을 창출한다.

⇒ 맞다. 상소의 기회를 무한정 제공할 수는 없을 게다. 상소로는 더 이상 뒤집히지 않는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은, 언제든지 상소에 의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흔들릴 게다.

4) 그런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무죄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억울함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형사 재심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맥락 짚기] 확정판결까지의 절차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확정판결 이후의 절차가 관심의 대상이다.

[주목]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2)의 ‘특별한 불복 신청’이 곧 ‘형사 재심 제도’인 셈이겠다.

⇒ 확정판결도 때에 따라서는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가. 물론 쉽게 뒤집힌다면 3)에서 목적으로 하는 **법적 안정성**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게다. 따라서 어떤 증거가 ‘무죄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지가 문제가 될 텐데.....

문단2 : 형사 재심 제도의 절차

1) 형사 재심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Rew] 문단1-2)에 따르면 상소를 하지 않았거나, 상급 법원들에서의 재판까지 끝나야 확정판결이 이루어진다. 그중에서도 **유죄**의 확정판결만이 뒤집힐 수 있다. 즉 무죄의 확정판결은 뒤집힐 수 없다.

2) **현저한 사실 오인**[→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일]이 개입한 상황을 [이미 확정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비상적인 절차**로,

⇒ ‘형사 재심 제도’는 확정판결을 뒤집는 만큼, 미미한 사실 오인으로는 턱도 없다. **현저한 사실 오인**이어야만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 이루어진 확정판결을 뒤집는 만큼 이는 ‘사후적’·‘비상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그만큼 예외적인 제도임이 잘 느껴지는 대목이다.

[참고] ‘현저한 사실 오인이 개입한 상황을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오류가 아닌, 확정판결의 법령에 대한 해석의 오류는 재심 청구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3) 정의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형사 절차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확정력을 과기하는**[→ 확정판결을 뒤집는]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다.

⇒ 2)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형사 재심 제도’는 문단1-3)의 **법적 안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 안정성 못지않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의의 실현과 **인권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형사 재심 제도’는 법정 안정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정의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더 중시하는 제도인 게다.

* 개념 확장

법의 목적

독일 법철학자 라트부르흐에 따르면 법의 목적은 정의, 안정성, 합목적성에 있다. 정의로운 법이란 곧 올바른 법을 의미한다. **합목적성**이란 법이 따라야 하는 타당한 가치를 좇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법이 굳이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는 법이 그 만큼 사회 질서의 안정적인 유지에 기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의 법이 매일매일 예측할 수 없을 수준으로 바뀐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의 일상은 불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게다. 어제는 정당했던 행위가 오늘은 부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이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한마디로 **‘법적 안정성’**이라 한다.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려면 무엇보다도 법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사회 구성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어떤 행위가 정당한지, 어떤 권리가 보호받는지, 어떤 책임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추궁되는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만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준수하면서도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

세 가지 목적[→ 정의, 안정성, 합목적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세 가지 목적을 전부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적 안정성이 나머지 두 목적보다도 우선되어야 할까? 예를 들어 사회의 공분을 산 어떤 극악한 범죄자의 정체가 공소 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가 만료된 직후에 드러났다고 하자. 이때 공소 시효를 지켜 그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을 지키게 될 게다. 반대로 공소 시효를 무시하고 범죄자를 처벌한다면 법적 안정성 대신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게다. 법철학자 라트부르흐의 경우 설령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을 통한 사회의 안정성 유지가 얼마나 무거운 책무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4) 재심은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재심 청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개시될 수 있으며, ……

⇒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심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심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재심은 개시될 수 없다는 얘기다.

5) ……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 특별한 불복 신청]인 **재심 청구**가 있을 때 **재심 개시 절차**를 통해 개시가 결정된 경우에만 실질적인 재심인 **본안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맥락 짚기**] 형사 재심 제도의 대략적인 과정이다.

⇒ ‘재심 개시 절차’에서 모든 재심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아닐 게다. 따라서 재심 개시 절차에서 어떤 심사가 이루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

재심 청구 → 재심 개시 절차 → 본안 심판 절차

문단3 : 재심 개시 절차

1)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재심 사유**를 검토하는데, ……

⇒ ‘재심 사유’를 검토함으로써 ‘본안 심판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겠다. 재심 사유가 유효하다면 본안 심판 절차까지 진행될 테고, 유효하지 않다면 본안 심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게다.

[**참조**] 형사소송법 제420조에는 ‘재심 사유’가 열거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열거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확정판결이 뒤집히는 경우의 수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2) …… 그 사유로 확정판결에 오류가 있었음이 또 다른 재판을 통해 증명된 경우에는 **비교적 자명하게 재심**[→ 본안 심판 절차]이 개시된다.

⇒ 유효한 재심 사유의 첫 번째 경우다. 확정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확정판결은 뒤집혀야 마땅하다. 이 경우 본안 심판 절차는 비교적 자명하게 개시된다. 이때 원래의 확정판결의 오류는 **또 다른 재판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3) 예컨대 관련 법관이나 수사관 등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법법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제시된 증거가 허위, 또는 조작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등이다.

⇒ 첫 번째 경우의 예시다. 따라서 법관이나 수사관의 부정에 의해 확정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면 비교적 자명하게 재심이 개시된다. 또한 원래의 판결에 제시된 증거가 잘못된 증거였다면 비교적 자명하게 재심이 개시된다. 물론 이 사실들은 **또 다른 재판에 의해 증명된 것**이어야만 한다.

4) 이에 비해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즉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재심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항과 관련해서는 그 적용을 두고 여러 학설들이 대립하고 있다.

[**맥락 짚기**] 논의의 초점이 **개념 요소**에서 **관점 요소**로 옮겨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증거의 신규성’과 ‘증거의 명백성’과 관련하여 학설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주목해야겠다.

[**주목**] 3)의 첫 번째 경우가 ‘**기존의 증거가 잘못된 경우**’였다면 두 번째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경우**’이다.

⇒ 유효한 재심 사유의 두 번째 경우다. 첫 번째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 자명하게 재심이 개시되지는 않는단다. 보아하니 어떤 증거가 ‘**새로 발견된 증거인지**’[→ 증거의 신규성], 그리고 어떤 증거가 ‘**명백한 증거인지**’[→ 증거의 명백성]에 대해 견해가 갈리기 때문일 텐데……

[**참조**] 법학에서 여러 학설들이 충돌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따르는 ‘**다수설**’과 일부의 법학자들이 따르는 ‘**소수설**’로 나뉜다. 그렇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 판례]이 반드시 다수설을 따르지는 않는다. 소수설을 따르기도 하고 다수설도 소수설도 아닌 제3의 설을 따르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법학의 학설**’을 참고하자.

* 개념 확장

법학의 학설

법학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합의하는 지배적인 견해를 ‘**통설**’이라 한다. 그다음으로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견해를 ‘**다수설**’이라 하며 소수의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견해를 ‘**소수설**’이라 한다.

실제 판결에서도 통설·다수설을 따르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먼저 이론적 해석과 달리 실제 판결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이를테면 통설·다수설을 따를 경우 오히려 이치에 어긋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과거의 판례를 따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문단4 : 증거의 신규성

1) 증거의 신규성과 관련해서는 법원에게만 신규이면 되는지,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신규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맥락 짚기**] ‘증거의 신규성’에 대해서는 어떤 학설들이 대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게다. 핵심은 ‘당사자에게도 신규여야 하는지’에 있겠다.

2) 당사자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만한 증거를 알고 있었으나[→ 당사자에게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었으나] 이를 통해 다른 범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감추었다고 하자. **필요설**은 당사자에게 신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증거에 신규성이 없다고 본다. 허위의 진술을 한 이에게 재심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필요설’은 ‘새로운 증거’가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새로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에게만 새로운 증거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참조**] 당사자에게도 신규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사자가 증거를 감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는 신규가 아닌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그럴듯하다.

3) 반면 **불필요설**은 무고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재심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규성은 법원에 대하여만 존재하면 족하다고 본다.

⇒ ‘불필요설’은 법원에게만 새로운 증거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다수설**에 해당한다. 굳이 당사자에게까지 신규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증거를 감춘 당사자가 꽤끔하더라도 재심의 취지를 따르자는 게다.

4) **절충설**은 대개의 경우 당사자에 대한 신규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 ‘불필요설’을 따르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의 경우에만 ‘필요설’의 취지를 받아들여 당사자에게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재심을 허락할 수 없다고 본다].

⇒ 이를 그대로 ‘필요설’과 ‘불필요설’의 절충이다. 기본적으로는 불필요설을 따르지만,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또는 실수로[→ 과실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설을 따른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판례는 절충설을 따른다.

[참고] 형사 소송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히 구분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이 처벌의 대상이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고의는 행위자가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그 행위를 했을 때 인정된다면, 과실은 행위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채 그 행위를 했을 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을 맞힐 생각으로 돌을 던졌다면 '고의'다.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맞힐 수 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돌을 던졌다면 '과실'이다.

⇒ '증거의 신규성'에 대한 학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증거의 신규성	요건
필요설	법원, 당사자 모두에게 새로워야 함
불필요설	법원에게만 새로워도 충분함
절충설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증거를 숨기지 않았다면, 법원에게만 새로워도 충분함[→ 불필요설]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증거를 숨겼다면, 법원, 당사자 모두에게 새로워야 함[→ 필요설, 재심 허용 ×]

문단5 : 증거의 명백성 - 엄격설

1) 증거의 명백성과 관련해서는 명백성의 정도에 관해 의견이 엇갈린다. 간접 활동을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동안 사정상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사자가 간접이 아니라는 진술서[→ 새로운 증거]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고 하자.

[백락 짚기] 문단4의 '증거의 신규성'에서 '증거의 명백성'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증거의 명백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명백해야 하는지, 그 정도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

2) 이와 관련하여 **엄격설**에 따르면 명백한 증거라 함은 사실 인정을 가능케 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기여한] 기존 증거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확정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 표현은 상당히 어렵지만..... 명백함의 정도에 대해 이름 그대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게다. 이들에 따르면 결국 유죄의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지닌 증거만이 '명백한 증거'다. 그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면 재심의 개시는 턱도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에 해당하며, 판례 역시 '엄격설'을 따른다.

3) 이 입장에 따르면 [새로운 증거인] 진술서는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아서] 그 증거의 가치 판단을 법관의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판단인 자유 심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엄격설'에 따르면 법관의 자유 심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지 않은 증거들은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문단6 : 증거의 명백성 - 완화설

1) 반면 **완화설**에 따르면 ['엄격설'처럼] 증거의 명백성으로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정도의 개연성[→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본 재판에서조차 부담시키지 않는 무죄의 입증 책임을 재심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지나치다.

⇒ '완화설'의 입장에서는 문단5-2)의 '엄격설'이 요구하는 '고도의 개연성'은 재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한 기준이라는 얘기다. 보나 마나 적당한 수준의 개연성이면 족하지 않겠냐는..... 그런 주장일 게다.

[참조]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반면 '엄격설'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의 입증 책임은 재심 청구인에게 있다. '완화설'의 입장에서 이는 상대

적 약자인 피고인을 최대한 배려하는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이다. 그러나 '엄격설'을 따르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규 증거의 명백성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또한 재심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 심판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데, 증거의 명백성을 무겁게 다루면 사실상 본안 심판 절차의 진행이 무의미해지는 문제도 있다.

[Rew] 문단2-5)에 따르면 '재심 개시 절차'는 본안 심판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실질적인 재심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증거의 명백성'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은 정작 중요한 본안 심판 절차[→ 실질적인 재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3) 이 입장[→ '완화설']은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서일지라도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하는 정도라면 재심 개시에 족하다고 본다.

⇒ 따라서 '완화설'은 '엄격설'이 문단5-2)에서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지니지 않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하는 정도라도 충분히 '명백한 증거'라는 얘기다.

[Rew] 문단5의 '엄격설'에 따르면 그 내용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진술서는 객관적이지 않은 증거다[→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해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술서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완화설'에 따르면 진술서의 내용이 명백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의심이 생기게 한다면, 그 진술서는 충분히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4)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결정하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여기에서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 맞다. 엄격한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요구해야만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재심 청구는 실제 '본안 심판 절차'로 이어질 테고, 그래야만 피고인에게는 이익이 될 게다. '증거의 명백성'에 대한 학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증거의 명백성	요건
엄격설	유죄의 확정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u>고도의 개연성</u> 을 갖춰야 함
완화설	유죄의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에 <u>합리적 의심</u> 이 생기게 하는 정도면 충분함